

과업내용서

사업명	외국인(중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한 성북구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5. 11.

성 북 구
[문화체육과]

목 차

I. 과업의 개요	4
1. 과업명칭	4
2. 과업기간	4
3. 과업범위	4
4. 과업목적	4
5. 과업의 기본방향	4
6. 과업의 일반사항	4
II. 과업의 일반지침	5
1. 일반사항	5
2. 용역수행자 책임과 의무	6
3. 과업수행 보고	7
4. 과업내용 변경 및 용역기간 조정	8
5. 과업수행의 특수조건	9
6.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9
7. 보안사항	9
III. 과업의 세부지침	10
1. 관광트렌드 보편추세와 중국인의 한국관광흐름 파악	10
○ 21세기형 관광트렌드이 특징과 중국의 관광정책 변화분석	10
○ 중국인의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성북구의 시사점	10
○ 성북구의 친(親) 외국인(중국인) 컨셉 탐색	10
2. 성북구 관광문화자원의 실태 파악	11
○ 성북구 관광문화자원의 현황분석	11
○ 성북구 역사문화자원의 친(親) 외국인화를 위한 필요조건 모색	11
3. 성북구 거주 유학생 대상 성북구 관광문화자원 설문조사	11

- 외국인(중국인) 유학생들의 성북구 관광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조사 11
- 외국인(중국인) 친화적 성북구 문화자원의 효능감 제고 방안 11
- 성북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11

IV. 과업의 추진 및 일정 11

- 1. 과업보고 11
- 2. 성과품 제출 12

V. 공정 예정표 13

- 붙임 1 보안각서(대표자) 14
- 붙임 2 보안각서(과업참여자) 15
- 붙임 3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명단 16
- 붙임 4 관계기관 협의내용 17

I 과업 개요

■ 과업명: 외국인(중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한 성북구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 과업기간: 6개월(2015.7.21. ~ 2016.1.20.)

■ 과업범위

- 공간적 - 성북구의 주요 관광문화 자원
- 시간적 - 2015~6년 현재적 시점

■ 과업의 목적

- 한국방문 중국인 6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인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성북구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 중국인이 지속적으로 성북구를 방문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성북구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함.

■ 과업의 기본방향

- 성북구 관광문화자원에 대한 현황파악 및 외국인(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인지도와 만족도를 평가함.
- 성북구 주요 관광문화자원에 대한 외국인 인식을 기초로 향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차원의 방안을 모색함.

■ 과업의 일반사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용역비 : 금18,990천원

II 과업 일반 지침

■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외국인(중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한 성북구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용역 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등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참여자는 ‘성북구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관련 연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특정기관 및 업체에 과업의 일부를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본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각종 기본통계 및 조사 자료는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통계청, 서울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신뢰성 있는 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서로간의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용역 감독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인력 동원 현황, 각 분야별에 대한 공정별 업무 수행상태 등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와 용역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용역수행자 책임과 의무

- 본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당해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감독자는 용역참여자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책임연구원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고 또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 및 용역수행상 관리소홀, 사업계획 추진의 차질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수행자는 용역준공 후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중요한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같음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계, 현장대리인계(책임연구원), 참여인력(이력서 첨부), 세부예정공정표, 계약 내역서, 보안각서, 용역수행 장비리스트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 세부수행계획서(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조직 및 인력투입, 과업내용, 세부공정계획,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등)
- 용역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성과품을 준공예정일 7일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보고

- 보고회는 정기보고회를 3회 구분하여 실시한다.
- ※ 정기보고회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착수보고회 : 연구개요 및 목적, 제안 내용(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과업진도 60%이상 진행시
- 최종보고회 : 과업완료 20일전 최종보고
- 보고회는 과업수행자가 참여하여 책임연구원 등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PPT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 필요시 수시보고를 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예정 공정보다 현저하게 지연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하며, 보고회 이외의 용역의 과업수행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의견 청취하여 보고회와 전문기관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변경 및 용역기간 조정

- 과업의 내용이 당초 계획과 달리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은 계약금액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 기간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이나 상위계획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우리 구의 정책변화, 계획변경으로 과업물량이 증감된 경우
 - 기타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항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대금지급 일부 유보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용역을 일시 중지 요청할 수 있고 중지요인이 해소되면 즉시 해지요청을 해야 한다.

■ 과업수행의 특수조건

- 본 과업의 궁극적 목표는 '외국인(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북구의 관광문화자원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 차원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성북구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외국인 친화적인 관광문화자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용역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진행이 곤란할 경우
 -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었거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 과업에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 보안사항

-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해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고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 과업참여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체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분실·도난·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 과업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자료 등은 과업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으며 자료유출로 인한 제반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 대상 자료는 완전히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보안대책의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지키고 발주처의 지시를 받는다.

III 과업 세부 지침

1. 관광트렌드의 보편추세와 중국인의 한국관광 흐름 파악

- 21세기형 관광트렌드의 특징과 중국의 관광정책 변화 분석
 - 세계화 시대의 관광의 변화 원인과 흐름 파악
 -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관광유형 분석
 - 중국인의 한국방문의 성격과 특징 파악
- 중국인의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성북구의 시사점
- 성북구의 친(親) 외국인(중국인) 컨셉 탐색

2. 성북구 관광문화자원의 실태 파악

■ 성북구 관광문화자원의 현황분석

- 성북구 관광홍보자료 분석
- 외국인(중국인)이 더 알고 싶은 곳, 더 알리고 싶은 곳 선정

■ 성북구 역사문화자원의 친(親)외국인화를 위한 필요조건 모색

3. 성북구 거주 유학생 대상 성북구 관광문화자원 설문조사

■ 외국인(중국인) 유학생들의 성북구 관광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조사

- 성북구 내 소재 대학 유학생 약 300명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
- 주요 성북구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 유학생들의 설문 분석을 통한 친외국인 지향 홍보방안 모색

■ 외국인(중국인) 친화적 성북구 문화자원의 효능감 제고 방안

-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현 역사문화자원 평가
- 외국인 친화적 성북구 역사문화자원의 개선방안 마련 시 유의해야 할 점 파악

■ 성북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내용과 중국인의 관광패턴을 결합한 중국인의 성북구 관광유입 방안 강구
- 중국인 관광활성화 성공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성북구 특색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IV 과업의 추진 및 일정

■ 과업보고

- 과업착수일 : 착수계 접수일

- 착수 보고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 ①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② 과업 세부수행 계획(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해 착수보고회 실시

- 공정 보고 : 월 1회(익월 5일까지 제출)

- 중간 보고 : 1회(필요시 별도 보고)

- 최종 보고 : 1회(계약만료 20일전)

- 최종 보고는 관련 부서와 협의, 심의보완 이후 최종 연구 결과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일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자문 회의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 자문회의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기관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며, 개최시기 및 자문사항은 연구진행 상황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성과품 제출

가. 작성방법

-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각종 조사 자료와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자료는 전산처리 후 CD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구 분	제출자료 종류	수량	비고
성과품 책자 (칼라인쇄)	○ 최종보고서	30부	국배판(A4)
성과품 CD	○ CD-ROM 파일 (기초자료, 보고회 등 모든 성과품 자료)	3매	
기 타	○ 현황조사자료, 사진첩, 책자, 기타 관련자료 등	1식	

※ 파워포인트 보고자료 원본 파일 제출

※ 제출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V 공정예정표

공 정 별	추진일정(일)				비고	
	50	100	150	180		
1. 새로운 관광트랜드 현황 파악 및 중국관광 추세와 관광산업 분석	[Progress bar from 50 to 100]					
2. 성북구 거주 유학생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	[Progress bar from 100 to 150]					
3. 설문조사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및 대안 제안	[Progress bar from 150 to 180]					
4. 최종 정리	[Progress bar from 180 to 180]					
5. 성과품 작성	[Progress bar from 180 to 180]					
보 고 회	착수보고	[Progress bar from 50 to 50]				
	중간보고	[Progress bar from 150 to 150]				
	최종보고	[Progress bar from 180 to 180]				

[붙임 1] (대표자)

보 안 각 서

본인은 2015년 월 일 귀 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범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5년 월 일

소 속 :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직 위 : 소 장

성 명 : 김 영 진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성 북 구 청 장 귀하

[붙임 5]

관계기관 협의내용

구분	관계기관	의견내용	검토내용	조치계획	비고
-	-	-	-	-	-